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35
----------	-------

발의연월일 : 2023. 7. 7.

발의자 : 소병훈 · 김승남 · 김의겸  
송옥주 · 안호영 · 어기구  
윤재갑 · 이원택 · 임종성  
최인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신설 등).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47조 및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 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 또는 군수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u></p> <p><u>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u>  <u>(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u>  <u>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u>  <u>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u>  <u>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u>  <u>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u>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u>  <u>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u>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u>  <u>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 및</u>  <u>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u>  <u>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u>  <u>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u>  <u>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u>  <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u>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u>  <u>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u>  <u>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1.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u></p>	<p><u>&lt;삭 제&gt;</u></p>

###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  
용하는 계획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  
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  
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  
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  
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  
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  
다.

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p>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      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      행자”라 한다)는 <u>농지이용계획</u>  <u>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u>  <u>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u>  <u>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u>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u>  <u>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u>  <u>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u></p> <p>②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      -----      -----      ----- <u>농지</u>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u>  <u>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u>  <u>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u>  <u>다)-----      -----      -----.</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p> <p>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u>  <u>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u>  <u>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u>  <u>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u></p>
--	---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

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  
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  
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

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  
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  
계 시장 또는 군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  
방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  
출을 요청받은 시장 또는 군수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 또는 군수가 실천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  
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